##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14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 박완주·김영진·박상혁

변재일 • 신정훈 • 정태호

주철현 • 하태경 • 홍기원

황운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통 해 유통되는 영상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분야에서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이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이 일정부분 보장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10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0(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
	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
	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
	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
	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
	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
	<u>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u>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u>야 한다.</u>